

4) 폐기

-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시오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

○ 제품 NFPA 등급

(※ 0-불충분, 1-약간, 2-보통, 3-높음, 4-매우높음)

제품명	보건 Health	화재 Flammable	반응성 Reaction
80-100 Asphalt AP-3	0	1	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No.	KE No.	함유량(%)
Asphalt	아스팔텐 ; 역청;석유 역청	8052-42-4	KE-01954	100

4. 응급조치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**
-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내시오.
 -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**
-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내시오.
 -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다. 흡입했을 때**
- 물질을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.
 -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.
 -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 -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라. 먹었을 때**
- 물질을 먹었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.
 -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**
- 노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의학적 조치에 따라 전문화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.
 -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**
-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.
 - 직접주수 (부적절한 소화제)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**
- 화재시 자극성, 부식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.
 -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할 수 있음.
- 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**
-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 -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,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.
 -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.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- 보호구 항(「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」항 참조)의 예방조치를 하고,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시오.
 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
 -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.
 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- 다량 누출시 수로, 하수구, 지하실,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.
-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- 불활성 물질(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)로 옆지른 것을 흡수하고,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.
 -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- 가. 안전취급요령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/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 -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.
 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 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십시오.
 -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나. 안전한 저장방법
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 -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. - 금연
 -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.

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화학물질명	국내규정	ACGIH 규정	OSHA 규정	생물학적 노출기준
Asphalt	TWA : 0.5 mg/m3	TWA, 0.5 mg/m3, as benzene-soluble inhalable aerosol	자료없음	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(PAHs) : 소변 중 1-Hydroxypyrene(1-HP)(with hydrolysis)(주중 작업후)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.

-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.

다. 개인보호구

○ 호흡기 보호

-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노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,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- 노출농도가 1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- 노출농도가 25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 (loose-fitting) 후드/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/방독마스크 (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)를 착용하십시오.
- 노출농도가 5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/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- 노출농도가 10,0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/후드 타입,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- 노출농도가 100,0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(SCBA)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(SCBA)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○ 눈 보호

-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십시오.
-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(샤워식)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십시오.

○ 손 보호

-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.

○ 신체 보호

-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 의복을 착용하십시오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항목	입력값
외관	고체
색상	어두운색
냄새	아스팔트 냄새
냄새역치	자료없음
pH	4
녹는점/어는점	>57.2 °C
초기 끓는점과 끓는점범위	> 400 °C
인화점	> 260 °C
증발속도	자료없음
인화성(고체,기체)	고체
인화폭발범위	해당없음
증기압	<0.01 kPa (<0.1mmHg @20 °C)
용해도	(물 용해도: 불용성. 용매 가용성: 가용성: 오일, 테레빈, 석유, 이황화탄소, 클로로폼

증기밀도	>1.6 (공기=1)
비중	1.1 ((물=1))
분배계수	자료없음
자연발화온도	≥400
분해온도	자료없음
점도	약 1100 mm ² /s (at 120°C)
분자량	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-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.
 - 화재시 자극성, 부식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.
- 나. 피해야 할 조건 - 열, 스파크, 화염, 마찰, 충격, 오염 등 점화원
- 다. 피해야 할 물질 - 가연성 물질
-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호흡기를 통한 흡입
 - 호흡기를 통한 흡입 영향 없음
- 피부접촉
 - 피부 접촉 시 영향 없음
- 눈 접촉
 - 눈 접촉 시 영향 없음
- 입을 통한 접촉
 - 입을 통한 섭취 영향 없음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- 급성독성
 - * 경구 - 분류되지 않음 (ATEmix > 2000 mg/kg)
 - Asphalt : 랫드(암/수); LD50 > 5000 mg/L, 사망없음 (OECD TG 401, GLP) (ECHA)
 - * 경피 - 분류되지 않음 (ATEmix > 2000 mg/kg)
 - Asphalt : 토끼(암/수); LD50 > 2000 mg/L, 사망없음 (OECD TG 402, GLP) (ECHA)
 - * 흡입(가스) - 해당없음
 - Asphalt : 해당없음
 - * 흡입(증기) - 해당없음
 - Asphalt : 자료없음
 - * 흡입(분진, 미스트) - 분류되지 않음 (ATEmix > 5 mg/L)
 - Asphalt : 랫드(암/수); 에어로졸 및 증기 혼합 흡입; LC50 > 94.4 mg/m³ air /4.5h (OECD TG 403, GLP) (ECHA)

○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/자극성 시험결과, 비자극성 (OECD TG 404, GLP) (ECHA)

○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토끼를 대상으로 심한 눈손상/자극성 시험결과, 비자극성 (OECD TG 405, GLP) (ECHA)

○ 호흡기과민성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자료없음

○ 피부과민성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, 비과민성 (OECD TG 406, GLP) (ECHA)

○ 발암성 : 구분 2

- Asphalt : 고용노동부고시 : 발암성 2
IARC : Group 2B (인체에 발암가능)
ACGIH : A4 (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(fume, coal tar-free))
마우스를 대상으로 7.14 mg/day의 농도로 2년간 반복경피독성/발암성 병합독성시험결과, 포장용 bitumen fume 응축물은 발암성을 유발하지 않음 (OECD TG 453) (ECHA)

○ 생식세포변이원성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시험관 내 박테리아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포유류 염색체이상시험 (OECD TG 473)결과, 모두 음성 (ECHA)
생체 내 포유류 유전자세포 돌연변이시험결과, 음성 (ECHA)

○ 생식독성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50, 250, 1000 mg/kg/day의 농도로 2세대 생식독성시험결과, 악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NOAEL(생식 및 전신독성) = 1000 mg/kg/day (OECD TG 416, GLP) (ECHA)
랫드를 대상으로 0, 50, 150, 500 mg/m³ air의 농도로 태아발달독성시험결과, 500 mg/m³에서 태아 체중 감소로 인해 NOAEL(발달독성)=150 mg/m³ (OECD TG 414, GLP) (ECHA)

○ 표적장기·전신독성물질(1회노출)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급성경구독성시험결과, 활동저하, 설사, 항문부위에 진갈색/검정 얼룩의 임상증상 관찰됨. LD50 > 5000 mg/L, 사망없음 (OECD TG 401, GLP) (ECHA)
토끼(암/수)를 대상으로 급성경피독성시험결과, 최소한의 투여관련 임상증상이 있을 뿐 유의미한 투여 관련 부검 결과나 체중 변이 없음. LD50 > 2000 mg/L, 사망없음 (OECD TG 402, GLP) (ECHA)
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급성흡입독성시험결과, 투여 관련된 이상증상 관찰되지 않음. LC50 > 94.4 mg/m³ air /4.5h (OECD TG 403, GLP) (ECHA)

○ 표적장기·전신독성물질(반복노출)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토끼(암/수)를 대상으로 200, 1000, 2000 mg/kg/day의 농도로 28일간 반복경피투여시험결과, 유의미한 병리조직학적 결과 없이 체중에 근거하여 NOAEL >= 2000 mg/kg bw/day로 설정됨 (투여 관련된 생식장기에 대한 영향 관찰되지 않음 (OECD TG 410, GLP) (ECHA)이

○ 흡인유해성 : 분류되지 않음

- Asphalt : 해당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-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: 분류되지 않음 (ATEmix>1mg/L)
-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: 분류되지 않음

○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

어류

- Asphalt : 96h-LL50(Oncorhynchus mykiss) > 1000 mg/l (유사물질 자료) (ECHA)

갑각류

- Asphalt : 48h-LL50(Daphnia magna) > 1000 mg/l (유사물질 자료) (ECHA)

조류

- Asphalt : 72h-ErL50(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) > 1000 mg/l (유사물질 자료) (ECHA)

○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

어류

- Asphalt : 자료없음

갑각류

- Asphalt : 21d-NOEL(Daphnia magna) >= 1000 mg/l (유사물질 자료) (ECHA)

조류

- Asphalt : 자료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○ 잔류성

- Asphalt : 자료없음

○ 분해성

- Asphalt : 자료없음

다. 생물농축성

○ 생물농축성

- Asphalt : 자료없음

○ 생분해성

- Asphalt : 자료없음

라. 토양이동성

- Asphalt : 자료없음

마. 오존층 유해성

- Asphalt : 해당없음

바. 기타 유해 영향

- Asphalt : 분류되지 않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 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하시오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 방지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에 명시된 처리 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(UN No.)

- 1999

나. 적정선적명

- TARS, LIQUID, including road oils, and cutback bitumens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3

라. 용기등급

- III

마. 해양오염물질

-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

-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E
-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E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Asphalt : 노출기준설정물질, PSM대상물질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- PRODUCT : 해당없음

- Asphalt : 해당없음

다.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

- Asphalt : 해당없음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- PRODUCT : 해당없음

- Asphalt : 해당없음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- PRODUCT : 지정폐기물- 폐유(고체상태)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○ 고압가스안전관리법

- Asphalt : 해당없음

○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

- Asphalt : 해당없음

○ EU 규제정보

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
- Asphalt : 해당없음

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
- Asphalt : 해당없음

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
- Asphalt : 해당없음

REACH 제한물질

- Asphalt : 해당없음

REACH 허가대상물질

- Asphalt : 해당없음

REACH SVHC

- Asphalt : 해당없음

EU PBT

- Asphalt : 해당없음

○ **미국 규제정보**

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

- Asphalt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

- Asphalt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

- Asphalt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

- Asphalt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

- Asphalt : 해당없음

○ **국제협약 정보**

로테르담 협약물질

- Asphalt : 해당없음

스톡홀름 협약물질

- Asphalt : 해당없음

몬트리올 의정서물질

- Asphalt : 해당없음

○ **National Inventory**

유럽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EINECS)

- Asphalt : 유럽 EINECS 기존화학물질

유럽 신고화학물질 Inventory(ELINCS)

- Asphalt : 해당없음

미국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TSCA)

- Asphalt : 미국 TSCA 기존화학물질

중국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IECSC)

- Asphalt : 중국 기존화학물질

일본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ENCS)

- Asphalt : 일본 ENCS 기존화학물질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내부 기술데이터 및 OECD eChemPortal, ECHA, NITE, TOXNET, IPCS, KOSHA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작성일자

- 2008-07-25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○ 개정횟수

- 3

○ 최종 개정일자

- 2025-12-31

○ 최종개정이력

- 2025년 GS칼텍스 제조제품 MSDS 정기 개정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0호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19호 내용 반영 - 최신 GHS data 반영하여 유해위험성 재계산 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함. 본 MSDS에 포함된 정보는 당사의 최신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안전취급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이며, 본 MSDS는 제품의 기술자료(TDS), 시험 성적서(CoA) 및 규격합의서로(Specification agreement) 사용될 수 없음. 본 제품의 사용자는 현행 법률이 정한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할 책무가 있음.